

준비를 하는 공산군을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공격할 수 없도록 하고, 카톨릭성당에서 폭동을 모의하는 사회주의 혁명분자들을 니카라과 경비대가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으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일단 국경을 넘어간 공산군은 추격할 수 없고 니카라과 혁명전쟁에서 카톨릭성당으로 들어간 사회주의 혁명분자는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요컨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지난날 베트남전쟁에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공산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니카라과 혁명전쟁에서 경비대가 사회주의혁명 게릴라들에 패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기부로 하여금 간첩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간첩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안기부는 존속시킬 가치가 없는 것이며, 안기부가 간첩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간첩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안기부를 존속시키고 안기부로 하여금 간첩을 잡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안기부로 하여금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성역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두 범죄를 수사하여 안기부와 협조하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주장할 지 모른다. 이런 주장은 우선 범죄수사의 특성과 검·경의 간첩 및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의 부족을 무시한 주장이다.

□ 공청회장 좌석표

진술인	진술인	대표 진술인	사회자	대표 진술인	진술인	진술인
양동안 교수	박 홍 교수	오제도 변호사	金道彦 위원	박연철 변호사	곽노현 교수	이재훈 변호사

속기사석

--

< 위원석 >

張永喆	林福鎭	千正培	韓英洙	咸錫宰
-----	-----	-----	-----	-----

보좌관석	직원석
------	-----

기자석	의원석	기 타
-----	-----	-----

방 청 석		
-------	--	--

방 청 석

방 청 석



신동아 96년 12월

인권 자료실	
B15	35

안기부법 재개정 찬성

안기부 대공수사

강화는 시대적 요구

비록 안기부법이 개혁 입법이라 할지라도 국가이익과 배치되거나 안보상황 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할 것이다.

鄭亨根

(신한국당 의원)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굳은 신념과 수호노력 없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성과도 일거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안보위기 상황을 접하면서 국가 대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과 함께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국가 안보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야 및 진보·보수 세력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과거 안기부 수사권 운용상의 과오는 문민정부의 개혁 추진으로 완전히 개선되어 더 이상 물의가 빚어질 소지가 없다고

보며,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안기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지는 논리가 아니고 국가 대공역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핵심조항인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해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으로 국내외 언론과 인권단체에 의한 사회적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있고, 수사관들 스스로도 『가문에 오점을 남길 일은 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윤리관을 갖고 있는 등 인권 탄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환경이 변화하였다.

안기부가 다가오는 대선을 겨냥하여 공

야 체감비용과 신고비용의 피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실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선거부정의 주역들이 모두 빠진 잘못된 실사결과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있었다.

그러나 선거비용 실사는 선관위가 선거 기간 전후 선거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그리고 국민·정당·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류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선거부정 전반을 밝혀 내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경쟁후보 진영조차 침묵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신문광고, 선관위원장 공한·전화 및 방문을 통해 거듭 안내했음에도 왜 정당과 후보자들은 문제지역 후보자들의 회계보고서에 대해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고발·수사의뢰 대상을 놓고 사전에 정치권과 조율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선거비용실사에 있어 고발·수사의뢰의 주체는 해당 시·도선관위이며 중앙선관위는 일선선관위에서 적발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전국적인 관점에서 조치의 형평성, 선거법 적용의 정확성, 범지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의 조사대상 선정은 일선에서 이

미 작성된 보고서류의 검증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감은 있을 수 없다. 정당별 배분비용을 사전에 정하고 여기에 끼워 넣거나 선별적으로 조치하거나 하는 등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실제 4·11총선 비용실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만 해도 여야 정치권에서 느긋한 반응을 보이다가 막상 고발·수사의뢰자 명단을 확인한 뒤 경악했다는 사실도 사전조율설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 시비 대상이 됐던 당선자 일부가 고발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대부분 선거비용 실사기간 전에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수사착수 이후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지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7개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지도 벌써 1개월 남짓 지났다. 선거 얘기도 시들해졌고 불법선거 비용을 쓴 후보는 정치생명이 끝장날 것이라는 언론의 한때 보도도 기억에서 아득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총선에서 살포된 불법적인 선거비용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선거비용 실사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선거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94년 봄의 열정과 의욕을 되살려 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지난 95년 새로 건립한 안기부 내곡동 신청사.

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여당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문제는 「한 총련」 사태 당시 국가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안기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질타한 데서부터 비롯됐으며,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이 표면화되면서 형성된 폭 넓은 안보공감대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격 거론된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대통령선거 직전에 발생한 87년도의 KAL기 격추사건이나 92년도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가 마치 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적 시기에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속셈을 모른 데서

비롯된 것이며, 안기부는 본연의 위치에서 수사에 임했음을 당시 안기부에 근무했던 본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선정국에 대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을 보완하려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며, 여기에 동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국가경영에 참여할 때도 과연 지금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비록 안기부법이 개혁 입법이라 할지라도 국가이익과 배치되거나 안보상황 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할 것이다. 또한 93년 12월 당시 안기부법의 대공수사권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 안기부의 임무·기능과 무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안기부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축소시켰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도 저절로 나올 것으로 믿는다.

다음으로 수사권 보완이 인권침해와 직결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피해의식의 발로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공작정치 우려는 기우일 뿐

현재 우리의 정치상황이 독재정권 시대라고 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겠으나, 수사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문민시대에는 이같은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 일부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처리하면 인권침해가 없고, 안기부가 수사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시각을 갖고 안기부의 수사권 보완 불가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현재 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시 경찰과 똑같이 검찰의 수사지휘 등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기부법에는 세계 어느 법에도 유래가 없는 직권남용죄가 신설돼,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변호인 접견제한 및 구속 사실 통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사소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법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정보위의 실질적인 통제도 받고 있다.

현재와 같이 안보 위협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경의 기능 보강이 절실한 것

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경우 민생치안 활동이 주임무이고,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순수 대공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 검찰 역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공소유지가 주임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한 보완만으로 폭증하는 대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핵심기관인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야만 입체적인 대공수사활동을 통해 간첩 및 좌익 세력들의 반국가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야권 등 일부에서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은 개혁의 후퇴일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공안정국 조성 등을 통해 대선에 악용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는 등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가 안보와 체제논리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

먼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개혁의 원래 취지와 부합된다. 현재 정부의 개혁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은 약화된 국가 대공역량을 보강하여 북한과 좌익세력들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데 있는 만큼 개혁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국보법 제7조 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상당수 국민들이 국보법 위반사범 전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 대공신고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용공조

작·인권유린 차단 등의 명분으로 수사권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을 매도·백안시 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유능한 수사요원들의 이탈과 근무의욕 상실 등 사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안기부를 적화통일의 최대장애물로 규정, 「안기부 해체투쟁」을 계속 선동해온 북한은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를 대남공작 여건을 호전시키는 계기로 보고 「부여침투 간첩」 김동식 및 「국적세탁 간첩」 간수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운동권 포섭을 기도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팩시밀리 등을 통해 수집 정보를 보고케 하는 등 대담하고도 과감한 공작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안기부의 강력한 대공수사능력이 북한 및 국내 좌익세력들에 심적인 압박을 주어 이들의 불순책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중요한 수사기능이 배제됨으로써 심리전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완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일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력을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전체적인 대공역량강화 측면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근 「한총련」의 8·15 폭력투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과 연계되거나 그 노선을 추종하는 좌익세력들의 체제도전책동이 국가안보에 끼치는 폐해는 간첩사건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



鄭亨根

- 1945년 부산생
- 서울대 법대졸
- 서울 고검 검사
- 안기부 기획판단 국장
- 안기부 1차장
- 신한국당 정세분석위원장

도 부인할 수 없다.

법개정, 좌익세력 대처에 필수

현재 북한은 국내 학원·노동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4만여명에 달하는 좌익세력들을 혁명주력군으로 만들기 위해 「민민전」 방송 및 고정간첩 등을 통해 체제전복 투쟁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 좌익 세력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 백주에 거리로 나서거나 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체제도전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좌익세력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지난 「한총련」 사태의 경우와 같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밖에 없어 국가존립 및 체제 수호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방첩망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안기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축소는 국가 전체 대공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안기부에 국보법 위반사범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것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적화 책

등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 폐지는 안기부의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결국 적 앞에 무장해제를 당한 꼴이 되어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간첩 등 반국가활동 혐의자들에게 대한 초동수사가 불가능해졌다.

통상 간첩 등 반국가 사범은 무장간첩과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

찬양, 고무행위에 대한 수사권 배제는 수사의 연속성·발전성 유지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첩 등 주요 핵심사범에 대한 기초수사를 봉쇄하고 있다.

적을 남기지 않고 동조세력을 배후조종하거나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간첩 수사의 출발점인 찬양·고무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무전기·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수사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찬양·고무 활동과 간첩활동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사상범죄의 경우 「학습·교육 등을 통한 사상 습득 단계 → 선전·선동 등을 통한 외부 표출단계 → 간첩활동 등 임무 실행단계」 등 3단계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사상범죄의 초기 1·2단계 즉, 찬양·고무행위에 대

한 수사권 배제는 수사의 연속성·발전성 유지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첩 등 주요 핵심사범에 대한 기초수사를 봉쇄하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으로 투쟁목표를 상설한 좌익세력들은 김일성 조문파동 등을 거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 반정부 활동을 빙자한 친북 이적활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또 최근 「한총련」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극좌세력들의 과격·폭력 투쟁은 위협수위를 넘어 체제전복 집단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크게 해이해져 감상적 통일열기가 만연하고 간첩사건을 발표해도 왜곡·조작이라고 인식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까지도 『훈련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좌익세력들의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 책동과 안보 불감증 만연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오판의 계기를 줄 우려가 다분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과 김정일의 모험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대남도발 위협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보법은 북한의 대남적화 책동에 맞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중 제7조는 남북한이 치열한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의 제작·배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단체를 결성하는 등의 반국가 행위를 처벌하는 핵심조항이다. 제10조 역

시 국가안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과 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많은 안보 전문가들조차 민생고에 허덕이는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한다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하고,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상 민주인사의 외피를 쓴 좌익세력들의 활동 공간은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거듭나는 안기부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강한 사상무장과 내부결속을 통해 생존 차원의 대남 적화공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부여침투 간첩사건과 최근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안기부를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해 온 북한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축소로 대남 공작활동 여건이 호전됐다는 인식하에 사회문화부·통일전선부·대외정보조사부 등 6개 기관에 달하는 대남 공작기구를 확대 보강하여 12만여명의 특수 공작원을 양성하고 있고, 직접 침투는 물론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 공작과 북한을 축으로 해외 친북세력과 국내 좌익세력을 연결하는 대남 포위망 구축공작 등 다양한 형태의 간첩침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민전」 방송 등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친북세력들에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은 과거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인식돼온 안기부를 본연의 국가 안보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고, 통치권자가 안기부를 더이상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있어 개혁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안기부가 법 개정 이후 환골탈태의 자세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 보강하고, 개개 구성원들의 자질 함양을 통해 본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칫 문민정부의 개혁성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내용 가운데 정치논리에 따라 축소된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상황이 안기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안기부에 간첩 등 반국가 사범을 색출하는데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국보법 제7조와 10조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지 않고서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과격·폭력화되고 있는 좌익세력들의 체제도전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안보현실 진단결과에 따른 것이다. □

동아일보 2000년 4월 14일

치아가 아프시니까?

성인의 80%가 치주염 앓고 있다!

순성희 외 4인

동아일보사 값 5,500원

안기부법 재개정 반대 안기부 수사권 확대는 개혁 역행

인권 자료실	
1996년 12월	216
B19	34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법을 재개정하려는 속뜻은 무엇인가. 다가올 대선에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야권에 대해 다시 색깔론을 펼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김근태
(국회의원·국민회의)

사실 고문과 맞서 싸운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악몽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지금,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신한국당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지난 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안기부(전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공작정치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두운 과거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되살아나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악명 높던 남산 안기부 건물의 해체와 더불어 역사 저편에 사라진 줄 알았던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를 되돌리고자 하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여기까지 어렵게 진전되어온 역사에 대한 책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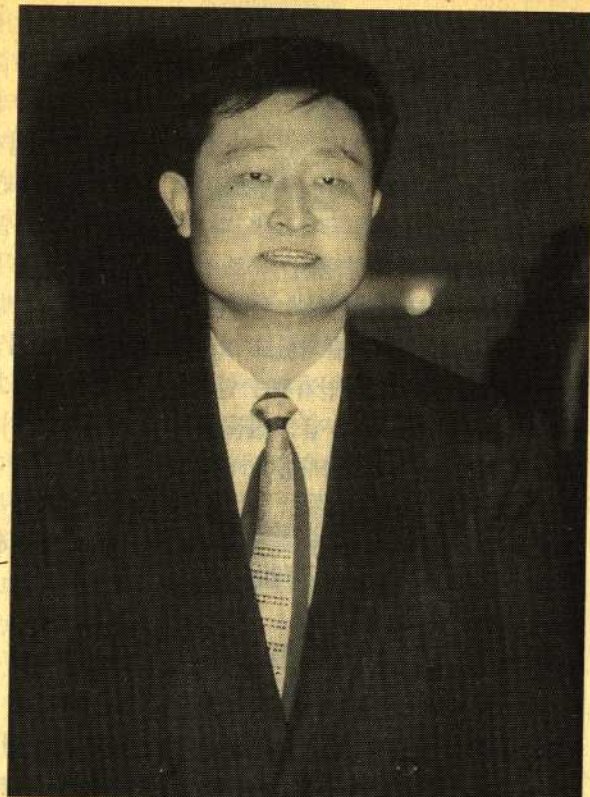
안기부란 이름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배어 있다. 안기부란 이름이 질곡의 과거사를 연상시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아득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틈엔가 사람의 마음을 음습하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끌고가는 힘을 갖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문득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막연한 공포감을 주는 공권력의 실체, 안기부 같은 권력기구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인지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면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운 채 차안에 머리를 처박혀 어두운 나락으로 끌려가는 공포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이유없이 불안하고 긴장되던 일,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치던 기억은 이제 문혀버린 과거지사일까? 독재체제의 정보기관이 지난날 저질러온 악행을 과거지사로 묻어버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를 거쳐 온 모든 사람의 바람일지 모른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로를 가로막는 잠재적 장벽이었으며, 때로는 전면에서 민주화 흐름과 부딪치며 불쌍사납게 뒤엎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대가 바뀌면 안기부도 민주화라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어찌지 못할 것이며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제모습을 추스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될 수 있었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은 군사독재시절의 어둠의 장막을 한꺼풀 걷어냈다. 역사는 인권유린과 공작정치의 구태를 벗고 다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에 참



간첩 김동식에 대한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당무위원 許仁壽씨가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여했던 金泳三씨가 당선됐으며 그 결과 이른바 문민정부가 등장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됐으며 국민들은 이에 힘찬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되살아나는 공작정치

안기부법 개정은 그 중 대표적인 개혁 입법이었다고 안기부의 권한을 제한하여 인권유린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결실을 보았다. 안기부법 개정 결과 안기

부가(중앙정보부 포함) 30여년간 줄곧 행 사해온 대공수사권의 일부를 검·경에 넘 기게 된 것은 순수 대공 목적 이외에 야당 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정치공작과 탄압의 소지를 없애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반국 가행위로 몰아붙이는 등의 정권안보적 공 작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규제조치였다.

군사독재 유지를 위한 통치기구로 전략 한 안기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 지에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했고 지지를 보냈다. 이에 발맞추어 안기부는 인권유 린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남산 건물을 버 리고 내곡동 새 청사로 이사했다. 내곡동

안기부법 재개정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작업을 부정하는 자기당착적 논리다. 안기부법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다. 여당의 중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여야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머나먼 과거사가 아니다.

안기부 청사는 최신 정보통신망 빌딩자동 화 사무자동화 등 3가지 첨단기능이 종합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정보화 (IBS)빌딩으로, 안기부는 새 건물에서 정 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 할 것임을 선언했다. 누구나 개정된 안기 부법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안기부의 탄생을 기대했다. 사실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믿고 싶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 한 심경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 부 일각에서 여전히 공작정치와 야당에 대 한 해묵은 색깔공세를 획책하고 있음이 도

처에서 드러났다. 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 인회(許仁會)씨에게 「간첩 김동식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 다. 새로운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보 다는 지난 시기의 공작정치를 연상케 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새삼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결국 허인회 당무위원은 국회 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허인회씨 사건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그것은 어떤 판결로도 회복되 지 않을 상처가 된 것이다. 또 우리 당 차 원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군사정권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용공음해가 지금 시 대에도 여전히 위력이 있음을 확인케 하는 계기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작 시대 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러다가 연세대 사태, 간수사건 이후 잠복해 있던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이은 잠수함침투 사건 등으로 경색된 국내외의 상황을 프 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지는 「냉전 의 마지막 격변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한 국당은 안기부법 재개정(안)을 올 정기국 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기부법 개정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영삼 정권의 개혁작업을 부정하는 자기당착적 논리다. 안기부법 개정은 김 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다. 여당의 중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여야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 머나먼 과거사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권 출범 이후 개혁 과정에 서 인권유린의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안기부법 개정에 함께 했던 여당이 이제와서 다시 표변한 것은 개혁 의 실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 니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구시대적인 정 치공작과 색깔론 조작 등 지난 시기 안기 부가 전담해온 낡은 수법을 못잊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 앞에 개혁은 퇴색하고 좌초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 움을 떨칠 수 없다.

대공 무능력 호도하는 자기당착

▲ 안보와 대공의 무능력을 호도하는 적반하장의 논리이다. 안기부는 한총련 사태, 간수사건의 예를 들어 안기부에 수 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공능력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위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면 한총련 사태와 간수사건은 안기부의 대공수사력 부재에서 기인한 것인가?

간수는 이미 10여년을 암약했으며 안 기부법이 개정된 것은 93년의 일에 지나 지 않는다. 이를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 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탓으로 돌리는 것 은 터무니없다. 사실 안기부는 여전히 대 간첩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몇 년동안 간수와 같은 간첩을 잡지 못한 것은 오히려 막강한 인원, 조직,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영상 태만, 무능,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대선을 대비한 집권세력의 포석이



김근래

- 1947년 경기 부천시
- 서울대 경제과 졸업
- 민주화운동청년 연합의장
-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
- 통일시대 민주주의 공동대표
- 국민의회의 부총재

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안기법 재개정 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속뜻이 무엇인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올 대선에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야권에 대해 다시 색깔론을 펼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 는 지적에 대해 여권은 묵묵부답이다. 지 금은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다. 민주주 의는 공작정치와 공개정치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다. 여당의 검·경 중립화 반대, 단 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방송법 개정 반대, 선심성 예산의 증대 등을 보면 여당은 집 권세력이 누려왔던 관련 금권 여론조작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유지하려 하고 있 다. 더불어 안기부법 재개정으로 공작정 치 재시도의 의혹을 깊게 하고 있다.

최근 안기부는 한총련 판문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세력 동조자로 매도하 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 교 육장에서 상영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비디오 테이 프를 만들고 예비군 교육장에서 상영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가 개탄하는 소리 가 높다. 이는 사법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구시대적인 힘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또 안기부는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지 좌익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러한데 안기부에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수사권까지 준다면 안기부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지 심히 우려된다.

최근 최환 서울지검 검사장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부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고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런 여러 정황이 총체적인 대선대비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깊게 한다.

▲ 국가보안법 7조, 10조는 그 자체가 그동안 거듭 위헌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확대해석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조항이다.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는 간첩을 잡는데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대공수사인력 5백여명의 증원과 5백40억여원의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97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또 반국가활동사범이나 추종분자 등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나 내사에 착수할 때는 안기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안 유관기관 실무자회의」에서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기부가 7조, 10조에 대한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기 정치사찰과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에게 학생, 언론, 정치권을 통제하기 위한 군정시대의 정보정치가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회의원회 당무위원 허인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0조의 무리한 적용과 집행에서도 문제는 분명히 드러난다. 재판부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허인희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독점을 의도하고 있는 안기부법 재개정 추진은 정보수집과 수사의 분리라는 세계적인 정보기관 운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쯤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프랑스의 DHSE,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수사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구 소련의 KGB가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듯이 대부분의 독재국가에서만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보와 자료수집보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문을 통해 얻어낸 1차 정보에 의존할 경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세계비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회 법사위 질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안기부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 30%만이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61%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안기부 조사과정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안기부는 96년 예산으로 1천9백여억원을 사용했으며 95년에는 재경원 예비비

중 70%에 달하는 3천2백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전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내역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재경원 예비비 명목같이 타부처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활동비가 존재한다. 각 부처에 편성된 정보예산은 안기부가 전용하는 것이다. 결국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현재의 안기부 역시 예산사용과 업무에서 지난 시대의 관행과 악습을 완전히 청산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현재 검·경의 관할인 국보법 7조와 10조에 대한 수사권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WTO체제하에서 세계적인 통상전쟁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의 시대를 대치하는 첨단 정보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전략을 가져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안기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특화된 정보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권력과 상관없이 정보업무가 이뤄질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 분석에 있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어느 정보기관이든 권력과 상대적으

로 분리되어 있는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안기부는 지금 자기변신의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먼저 과거 독재와 권력의 하부집단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개혁의 시대정신에 걸맞은 정보화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에 총력을 바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안기부는 행정개혁적 차원에서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치사찰과 공작을 통한 집권세력에 일조하는 것으로 부의 업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편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발맞추고 이미 시작된 정보전쟁시대를 대비하는 일은 더이상 머뭇거리 여유가 없다.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강가에 설 수 없다. 고문이 역사를 이기지 못했듯이 권력 또한 역사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다. 민주화를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였다. 그 무엇도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다시 과거로 시계 바늘을 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선택해야 한다. 안기부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를 향한 그동안의 무수한 노력과 믿음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

알긴산의 효파이야기 ㉠

영원한 청춘! 알긴산이 세월을 잡는다?

최근 한국 노화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최진호 부경대 교수는 알긴산이 생체노화과정 촉진에 관여 하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억제하고 유해활성산소종 제거효소인 슈퍼옥시드 디스무티아제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신기능성 소재 알긴산이 당신의 노화를 억제시켜 변치않는 청춘을 지켜 드립니다.

알긴산 함유음료 - 해조미인!

 동원산업

인 권 기 고		
인 권 기 고		
	215	53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한 견해

1997. 3.

변 호 사 오 제 도

우리는 지난날에 왜 공산주의와 왜 합작 착상 공존하지 못하고 적대하였느냐 해서 마치 좌우가 똑같이 분단의 책임과 통일에 저해 요인을 준 것 같이 환상적인 통일론이 오늘에 있어서 얼마나 안보통일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좌경.... 침공사상이 대두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자성하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좌가 우가 똑같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좌는 부정ियो 우는 정의요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공산주의와 싸움에 그 만들어 줬느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양민을 억압하고 자기말을 듣지 않을때는 반동이라고 그래서 처형하는 탄압하는 여기서부터 반동적인 것이 싹트기 시작된 것이지 결단코 공산주의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왜 김선생같은 위대한 애국자도 협상에 실패했고 또 지난번에 역대 정권에 대북 협상을 대화를 그렇게 집요하게 교섭을 해왔지만은 그때 그때 합의된 것도 있어서 즉각 운동성명이 남북통일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그 당시는 마치 이것이 역사적이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해서 환영하고 했지만은 이 것은 한낱 그들의 속임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오늘에 있어서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역사적인 심판이 내려져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지금 다른건 다 그만 두더라도 북한땅에서 지금 인구가 공산당을
2천만이라고 하는 양민들이 굶주려서 그간 10만명에 아사자가
났다는 참상을 탈북자 또는 외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이 비교해 볼때 우리가 만일에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북의 꼴이 안된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날에... 사업건과 무장공비 사건때 비로소 여야가 일치
단결해 가지고 대북... 널 정도에 안보에 확립을 기했다고 할때 어느
누가여기에 대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충돌이 생겼는지 알수가 없지만은 난데 없이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은... 국민에... 볼수 있어서
각 언론계에서도 ... 안기부법 안기부 대공수사권은 해방 시켜주라고
지적 한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갖고 여야가 대결해 갖고
안기부법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는 가운데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여당과 이것을 반대하는 야당간에 서로 타협 폐단이 없이 폭력
으로 막자하니 또한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와같은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것은 대공안보에 커다란 수치요 우리 정치가들은 국민에 크게

사과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다시... 이래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왜 안기부 대공수사권은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순수한 애국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경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공수사에 남달리 기염을 갖고 있고 또한... 위해서 국가보안법에 개정을 외쳐왔고 또는 대공수사 기관에 요원들에 대한 대공수사... 오랫동안 시켜온 사람에 한 사람으로서 현재 안기부법가지고서 안기부에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서 과연 간첩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 또 안 사실은 안기부 대공수사 요원들이 간첩을 잡는 가운데서 혹시 잘못.. 하면 집권남용이라고 해서 경찰과 검사와는 달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 하는것은 나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안기부 직원들 대공수사를 하지말라 일절 하지 말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경찰과 검찰과 안기부 직원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수사관 들인데 누구는 해준다고 하고 누구는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왜 이와같은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안기부에 중앙정보부에...

일을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나 부장은 (끊김)

정치인물을 탄압했다 집권 남용했다 이것이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 한다고 해서 그와같이 대두되던 불신을 가질른지 모릅니다. 나도 언론 자구에 검찰총장 하라고 하는것을 거부했더니...

해서 두번인가 투옥당한 일이 있고 내 가족도 또한 심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 감정이고 내 개인문제고 이거 국가적차원에서 과거 중앙정보부 그후에 안기부가 얼마만큼 국가에 공헌을 했고 국민의 안보에 만전을 기해 주었느냐 또는...

집권... 하는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물론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만 고치고 잘한 점은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과거의 잘못은 유신체제하에 있고 긴급조치 9호가 있었고 또 당시에 대통령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국장을 시켜가지고 그 국장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한 수사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이것이 시비의 대상인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갖고 현 대통령이 민주투사로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완전히 정치적인 사태가 정치적인 안보를 지향한다고 해서 엄명했고 또 그가 과거와 같은 식의 안기부 운영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을 골라서 또 ... 시켰고 그 직원들입니다. 안기부 직원들이 ... 지시없이 명령없이 자기자의로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나 부장은

그와같은 것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지시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이유는 없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잘못 됩니다. 그것이 단 안기부는 제한하고 경찰과 검사에게는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경찰하고 검사가 ... 때는 ,... 하면되지 않느냐 이렇게 흔히 말할 수가 있지만은 같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가운데 안기부 같은데서 그와같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제약을 받아가지고 위축이 된다고 하면 검사나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제한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안기부직원들에게 제한이 있는 이상 자기에게도 간접적으로 그와같은 ... 대공수사는 사명감을 갖고 어디까지나 사가가 충천해서 비로서 그 결사적이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배경이 튼튼한 그 사건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장 단서가 되는, 단서가 되는 고무찬양 그것도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적 단체 구성에 또 불온유인물.....

... 지 못한것은 그와 같은데서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보위기라고 하는 말 하기전에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 색출할 수 있는 이것을 ... 생각해야 될텐데 지금 황장엽이가 우리는 4만이라고 그랬는 데 5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4만인지 5만인지

그저는 여러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세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염을 생각할 때에 대통령이 그렇게 안 불렀지 또 월남에 대공수사기관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하지 않고 휴전동안에 ... 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궁을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에 ... 깊숙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대북 수사기관들이 그거를 대상으로 수사할수 없는 무력화돼 있고 좌경세력은 그 힘을 모으고 있어 결국은 월맹군에 의해서 가 아니라 월남내부에 의해서 점령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한에 있는 우수한 대학생을 비롯해서 관공서 또 기타 주요 기관에 견제한다고 하면은 멀지않은 장래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친공·연공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남북한이 연방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현재 쉬는 날... 그 밖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가지 회복을 해야 될 문제는 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공산당이요 공산주의자요 하다가 그거 가지고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일거에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 신림폭동사건, 제주도 폭동사건, 여순반란사건들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부터는 그들이 어떤 술책을 썼는가 하면 3당이 합동해서 남로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산당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느정도 친근한 사이가 되면은 그때 사회와 정치에 비판에 나가다가 조금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거기서 반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가운데 좌익소설, 혹은 그밖에 시 같은 것을 쥐가지고 읽게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혹은 자기한테 반항할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북한을 공산당을 찬양하는 거부하는 얘기를 꼬집에 내가지고 거기에 동조할때 점차적으로 북한에 지령을 쥐가지고 공작을 하는것이 그들의 상투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초보수사단계에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까워 질때부터 되는거 이 사람이 말 했다는거 거기부터는 이것이 가장이 실마리가 되고 단서가 돼가지고.... 하는 가운데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거물간첩, 거물조직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 대공수사 이래 자유당.... 지금까지에 일관된 사건적발에 수사단서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안기부를 없애는거 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문제가 왜 이렇게 항상 정치적으로 말썽이 됐느냐 하면은 항상 야당은 야당으로서 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당이

되면 어떻하겠느냐 하는것을 생각을 하고 또 안보가 있어야 여도 있고 야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결단코 이 안보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이것을 ... 불구하고 일부 사이비정치가들이 악용한 그 잘못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안보문제에 항상 문제제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공수사는 엄정중립을 지키고 연공조작을 막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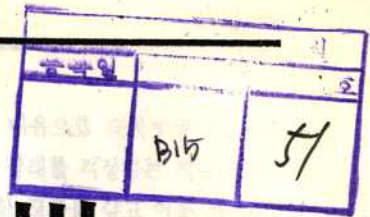
제 자랑 같지만은 자유당에 연공조작을 하는 거 심지어는 정필상씨 박사 박사 했다가 국제공산당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은 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또한 공산주의자로서 당에 활동을 많이 하다가 ... 해가지고 수류탄 6천개를 적발하게 협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빨치산에 적발됐든 그 좌익... 이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 공을 세워서 김일성으로 부터 살인지령을 받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당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항의하다가 본인이 체포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악이용한 몇가지고 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안보에 큰 지장을 준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또 정치가들은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서경원이 사건에 있어서 야당 총재에 대해서 마음을 줬다 안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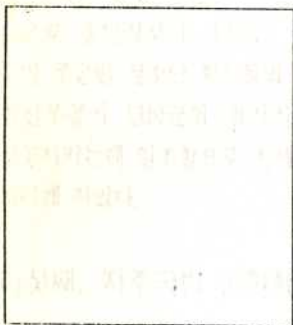
만약 그때 마음을 준게 사실이라면 그때 처단할 것이지 왜 정치적으로 흥정을 해 왔다가 지나간 일을 또 다시 묻습니까 나는 그런거 물을라면은 여당은 없습니까 여야할것 없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또 공산당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걸로 압니다. 이거 과거는 묻지 맙시다. 물론 사상 검증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여야가 합심협력해서 내 생각같아서는 내가 만일 야당 이라면 여당 못지 않게 안보를 강화하고 간첩 색출에 적극적인 법을 만들고 수사관들에게 상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은 그쪽에 국민들이 지지와 존경이 더많이 가면 같지 언정 이것을 과거 집권 남용했다고 해서 그것만 헐 뜯어가지고 자꾸... 시키고... 하면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소요될줄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한 의심나는거 말씀해주시면 제가 마음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安企部 대공수사법 改定해야 한다

-4만여 좌경 뿌리뽑자
좌경 친북단체 즉각 해체하라



오제도 / 본지회장, 변호사

지난 8월에 한총련사태가 일어나자 각 신문과 라디오, TV에서 대서특필 보도하고, 9월의 잠수함 무장공비사태에는 더욱 요란하게 종래의 '햇빛론 형님론'의 대북유화정책을 바꾸어 제검토 한다, 팀훈련 재개 제의방침 이념교육실시한다, 안보저해인동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를 받

게 된다,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 강화 한다, 등 요란하게 강경한 성명들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도 안보히점을 추궁하며 대북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심지어 UN안보리에 제소까지 하는 활발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마침내 북한공산주의 도발을 처음 경험하는 나라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늦게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며 한편으로는 그간의 대북정책이었던 '햇빛론 형님론'의 유화책을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최초의 반공운동했다.

이 나라는 최초의 반공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 2차 대전후 여러나라가 공산국가화 되었지만 1945년 11월 23일 소련군 점령하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젊은 10대 중고등학생 4천

여명이 자발적으로 반소 반공(자유, 민주)독립운동을 생명을 걸고 전개한 최초의 반공운동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공 반탁으로 대한민국 수립했다

위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북5도(함흥, 평양, 사리원등)에서 반공 반탁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고 그것이 남한에까지 파급되어 서북한련 서북청년회를 동아일보 강당에서 창립 결성케하여 남한의 전국학련 대한노총 그밖의 학생 청년회와 합심 협력하여 결사적 반공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산폭동을 진압하는 군경에게 협력하여 공산화를 반대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건국을 성공시켜 반공민주국가로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셋째, 민·군·경 협력으로
좌경세력 소탕했다

신성한 대한민국 내에 침투한 남
북노동당의 지리산, 오대산의 무장
공비와 관공서 그 외 주요기관에
대남공작대, 푸락치 등 좌경세력
30여%를 분쇄하는데 성공함으로
사상전향의 국민화합을 이루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넷째, 6·25 남침 반공정
신으로 극복했다

동존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남
침후 패전 후퇴 일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 반란없이 반공 정
신으로 총단결하여 싸웠고, 특히
무명 무군빈 청소년 학도들의 결사
참전무공이 UN군의 참전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함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다섯째, 자주국방 실현했다.

5·16후의 빛나는 경제발전과 자
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하여 의식주
의 빈곤을 타파하고 국가안보의 낙
후된 후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자
체방위의 핵무기까지 보유하려 했
고, 수도방위의 탱크진입로 봉쇄작
전을 구축했고, 진방초소의 자체방
위토대 및 동시해안철쇠 설치까지
구축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여섯째, 문민정부 출범으로
선진화 이루었다.

대북대화로 긴장을 완화한다 셈

치고 5공의 해주권포기, 6공의 주
한 미군 해철기, 특히 7.7 선인이
도리어 범민련 결성 등으로 좌경
친북세력이 표면에 등장해도 이를
강력히 대처하지 않고 우물 쭈물하
는 바람에 좌경 친북세력이 전국연
합(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으
로 발전하여 민족민주운동권의 실
세들이 총망라된 이 조직은 해방후
좌익세력의 총집결체였던 민족주의
민족진선(민진)이 판을 치며 반공
을 매도하여 안보불감증후군을 조
장하여 이 단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낙선되고 반대하는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씨가 당선되어 온 국
민의 기대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하
였으며, 오늘의 안전과 번영을 이
룩하여 선진화, 세계화로 약진하고
있음은 명실공히 반공보수의 승리
로서 또다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
다.

반공을 매도해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하게도 평화
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못된
틈바구니에서 일부 정상배들이 반
공과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군사독재 부정부패, 권력남용, 부
정축재등으로 불신풍조가 일어난
것을 기회로 좌경 친북세력들이 민
주인권을 내세워 온갖 수단방법으
로 반공 안보를 매도 타도하려고
해도 진정 반공 안보투쟁으로 대한
민국을 세웠고, 이를 지킨 반공 우
익세력의 절대다수는 뼈를 깎는 아
픔을 참고 청렴결백하고 근검절약
하는 가운데 단하나의 조국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대북정책과 민족통
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체험을 통한
훌륭한 경륜을 갖고 이를 자손들에
게 계승시키면서 그때 그때 대공대
북 '햇빛론 형님론'으로 우화책으
로 조장하는 좌경 친공세력의 위협
을 규탄, 질타, 그 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반공정신이 살아있기 때
문에 아니되는 것이다.

오늘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는
것이 최선책인가를 온 국민이 원하
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의 대공 대
북 안보에 관한 비판을 후일에 미
루고, 지난 93년 8월호 국회보 9월
호에 기고한 국가안보법 파동 독립
된 FBI창설 무산을 거울삼아 지난
번 대검 최병국 공안부장이 4만여
명의 좌경세력이 있다고 발표하면
서 해를 거듭하면서 그 세력이 커
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다고 한
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
워야 한다.

왜? 그들은 색출, 검거를 안하는
가, 못하는가, 라고 비판하는 글도
나왔고, 안기부 대공수사요원을 대
량 감원한 탓으로 못잡는다고도 하
고 그 수사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
고 신문사설에 지적되고 있다. 그
리하여 안기부 대공수사권은 회복
시켜야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
력히 요구되고 있다.

안기부 대공 수사법 개정할
이유

필자는 오랫동안 대공수사를 담
당한 경험도 있고, 또는 법의 미비
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왔고, 또한 대공

수사요원들에게 특강도 상당기간 한 일도 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대공수사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범국민적인 힘의 결집으로 도와주어야만 국가의 안보가 확고해지며 확실한 민주의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잘 훈련받은 결사적 조직법

그 대상이 확신적 사상범이고 동시에 결사적 조직법으로 고도의 밀봉교육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또는 그 이상 각방면의 전문지도원으로부터 교양, 훈련을 받아 침투대상에 잘 적용하여 위장 보호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문 훈련까지 받아 전기고문은 어떻게, 물고문은 어떻게, 구타고문은 어떻게, 잠 안재우는 때 어떻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밖 배경투쟁(교관 또는 유력인사를 배수 또는 접근하여 유사시 이용), 법적투쟁(무조건 부인, 경찰 또는 검사조서는 조작이라 주장, 또는 고문 안당했다고 당했다, 지해행위로 조작진술, 그밖 위증 등으로 무죄주장), 옥중투쟁(단식또는 피병으로 보석 또는 가석방기도) 등이고 기본적인 포섭, 집선, 조직 탐지 첩보자금조달, 비밀 아지트 등 다양한 공작으로 특별한 것은 반동화해공작이라 이것은 합법, 비합법적으로 침투하여 상대방의 이해타산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간시켜 서로 자기 편을 도와주는 것 같이 만들어 쌍방간 분

해시키는 고도의 전술이다.

그밖에 점점조직(서로 만나지 않고 기포등으로 접선하는 조직) 또는 무사상 무명당투쟁(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이나 공산주의 사상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회노애락을 같이하여 친근하여 친부모 형제같은 정을 통하여 공작을 무의식 중에 침투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대공수사는 특수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좌경 간첩을 색출, 검거하려면, 첫째 수사 단서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 정보 조직이 확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대상은 북한 및 해외 각국으로부터 침투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1개월 6개월 또는 1년내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용의자를 탐지했다고 즉각 검거하기 보다 그를 키워서 상하좌우의 피라미트 조직과 배후드식 연락관계와 그 공작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까지 일정기간 알게 모르게 기술적으로 직접, 간접 수사공작을 필요로 한다. 대공수사가 일반수사와 다른 것은 일반범죄는 도덕적 재산범이고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지만, 사상범은 북한이나 같은 좌익사상을 갖은 사람에게 동지로서 절대적 지원과 지탱을 받는 거대한 배경이 있고 성공하면 영호대접을 받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하고 철저한 대북국가관과 대공시

국관이 필요하다

이 사상범을 검거하는데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이 확고하고도 철저한 대북국가관과 대공시국관이 있어야 하며 공산당은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어야 한다.

둘째, 굳건한 대공법과 수사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 국가 보안법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대남 평화 및 무력적화의 전략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법이어야지 정권의 당리, 당락이 아니어야 하고, 또한 수사관원의 신분보장과 그 기구 및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국가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안보(반공)사상의 투명성을 갖고 좌경 친북세력 인사를 기용, 접근 보호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이를 발견시에는 즉각 제거하는 동시에 반공 애국인사를 기용, 접근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학원 그밖에 공공기관에 건전한 건국이념 및 대공 민주사상 교육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학생 및 기관원에게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북한주체사상(대남적화 폭력사상)에 오염되지 않게 대공시국관과 대북국가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 정신문화원 통일연수원의 애매모호한 환상적 통일교육을 지양하여 전면적 검토하여 사상, 양심, 충절의 투명성이 확고한 국가관과 시국관 확립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상전향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특사나 동용을 배풀어서는 결코 안된다.

여섯째, 대공수사기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경찰 보안사 검찰의 대공수사의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여 보완할 것은 두말할 것 없으나 우선 언론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기 부대공수사권 회복에 관한 것은 최초부터 개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필자는 그때 이것을 극구 반대했었다. 왜냐하면 안기부가 61년 발족이후 일부 본연의 임무이탈행위로 인해 소위 권력남용의 기관으로 간주되어 간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과 원성의 대상으로 인식 된 것은 사실이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인권침해, 정권안보를 근절시키고, 국가적 국민적 안보기관으로 새로 발족한 것은 상수로 환영해온 바이다.

그러나 여·야합의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10조(불고지)등 대공수사권의 축소 및 수사상 적법절차 보장으로 안기부 대공수사를 경찰 및 검찰과 차별을 두고 그 수사 대상을 제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안기부는 대공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까 그 수사원들이 아무리 일의를 내도 대내외적으로 위축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공수사의 큰 허점이 드러나 오늘의 좌경 친북세력이 활기를 치게 된

것이 아닌가, 언론계 등을 위시하여 걱정하는 여론이 고조되어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 법을 개정아니해도 좋았다는 근거로 종전의 안기부의 최고 통솔자는 대통령인데 민선대통령으로 교체되었다는 점과 안기부장이 민선대통령의 통솔하에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종전의 안기부직원의 독단적 권한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결재에 의하여 직무수행하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급박한 대공수사의 필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지금의 안기부 대공수사권을 회복시켜, 경찰 검찰과 함께하여 4만여 좌경 친북세력 색출을 촉구하는 것이 온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여·야 의원은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를 오늘의 현실에 알맞게 획기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아는 선진국의 대간첩수사 정보기구조직은 한마디로 조직화, 전문화, 과학화되어 실로 강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기구와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북한 대남공작을 완전히 파악 분쇄할 수 있는 법과 기구 및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전면전쟁을 전개하느냐, 국지전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무장공비 파괴 공작을 하느냐, 않느냐가 오늘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세가지 중 어느 것이던 간에 북한이 큰소리치고 전쟁, 백배 천배 보복이라는 등 공갈과 생트집을 쓰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남한에 좌경친북세력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어 얼마만큼 호응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50여년간 짐수함 무장공비 침투 같은 도발이 수없이 자행돼왔으나 그때 그때 쫓기대회와 함께 오늘의 강경 담화 성명으로 끝나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준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간 북한은 7·4공동성명, 남북총회합의서등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남북대화병에 걸리지 말고 대북대응책을 오늘과 같이 확고한 결의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무 때나 초전박살의 체제를 갖추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개척 개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수습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 국민이 환영하며 지지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안기부 대공수사법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4만 좌경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은 이 점을 명심 대북정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성 명 서 〉

“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하여 고정간첩 색출하자.

지난해 12월 10일 성명한 이후 아직도 구태의연한 안보불감증을 개탄하면서 오늘의 대공안보의 위협수위를 다시금 성명한다.

북한은 지금 공산당과 인민군만 견재하면 일반주민은 굶어죽어도 좌경친북세력인 남한민주공산혁명토대만 남한에 구축되면 그들로 하여금 남한민주공산혁명 정권을 만들어 그들과 고려연방제통일을 이루하여 그간의 누적된 에너지, 식량, 기간산업등 모든 경제난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그들의 현재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공존, 공영,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햇빛유화론을 펼쳐도, 또 북한에 자극을 주지 않고 主敵을 兄弟론으로 바꾸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미전향 장기수 李仁模를 북송하고 많은 식량을 보내주며 대화의 광장에 나오라고 해도 그들은 이를 고마워하기는 커녕 도리어 우리의 대통령을 입에 옮길수 없는 성토와 함께 대한민국을 타도하자며 전쟁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하게 평화통일만 내세워 반공안보는 수구세력으로 몰아세워서 마침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쥘잡는 것이 매라면 매의 발톱을 자르고 어떻게 쥘을 잡으려는가 61년이래 安企部는 檢軍警의 유능한 대공수사요원을 선발하여 특수훈련과 함께 수사, 정보, 사찰의 전담기관으로 관계기관을 조절하며 전국적 대공수사의 총본산으로 그간 거물간첩단을 많이 검거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보에 많은 공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일부 권력남용의 기관으로도 간주되어 비난과 원성을 산 것은 사실이나 문민정부출범이후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고 국가적 안보기관으로 새로이 발족하였고, 민선 大統領의 통솔하에 있으므로 종전과 같은 권력남용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7조(찬양, 고무) 10조(불고지죄)등 수사권 축소등으로 검,경과 차별을 두어 그 대상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안기부는 대공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작금의 상태에서 보듯이 김정일 북한체제는 변함없는 대남폭력적화노선으로 총력을 기울여, 핵위협, 전쟁위협, 더 나아가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아무런 죄의식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금 남한에는 북한의 지령으로 학원, 노동, 언론, 문화, 종교등 그밖에 중요기관에 침투된 4만여 좌경친북분자와 이를 비호하는 용공세력이 있다고 우국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우리주변엔 민주화, 개혁화, 진보화의 명문아래 각계 각층의 요직에 아무런 사전 사상검증없이 기용되어 친북활동을 하는 파행인사가 엄존하고 있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 채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란 있을 수 없으며 수십년 피땀으로 쌓아온 경제선진국이라는 그간의 노력도 한낱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김정일과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막강한 국가안전보위부의 3만여명 요원을 동원하여 모든 권력기관을 조종, 통제하며 수시로 대남 적화전략을 세우고 꺼리낌없이 행동에 옮기는 저들의 위협을 고려할때 대공전담기관으로서 대남적화전략을 차단 분쇄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지고 있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제한시켜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세계의 어느나라나 특히 민주국가일수록 막강한 대간첩 정보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반국가단체에 대하여서는 실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안기부는 오직 대공전담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의 논쟁이 있을수 없다.

안보없이선 민주발전도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그간의 안보불감증에서 대오각성하여 총력안보의 정신무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안기부를 비롯한 검,정,군의 대공수사권을 강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구국일념의 사명감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깊숙히 침투되어 있는 4만여명의 좌경세력과 그 비호 용공세적을 뿌리뽑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공산혁명토대구축을 막아 사회불안을 제거시키고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안정된 민주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국가안보의 지름길이요,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끝으로 황장엽이 말한 고정간첩 5만명과 권력 깊숙히 침투되어있는 간첩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대공기관이 간첩을 색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과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하고 그 중요성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안보교육협회 이사장
 북한탈출동포돕기운동본부
 이북7도도민회 중앙연합회 대표의장
 서강대학 총장
 서경대학 총장
 경민학원 이사장
 성균관대학 교수
 극동문제연구소장
 호인청우회장
 북한연구소장
 신의주학생기념회장
 예비역장성불교연합법회회장
 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자유민주수호총연맹회장
 대한반공청년회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한국전쟁참전연맹 회장
 북한출신 전 국회의원의회운영위원장
 전 국회사무총장
 기독교산업연구소장
 한국기독교교회 청년협의회장
 한국교회지도자 교육원장
 통일문화진흥회의장
 한국기독교협회장
 한국유격군연합회장
 한국교회평신도협회장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사무총장
 한국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
 평북도민회회장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 사무총장
 승의학원 이사장
 정치학 박사
 국가상징자문위원장
 한국논단
 민족안보구국통일협의회

오 재 도
 김 윤 근
 오 자 복
 박 흥
 민 병 천
 홍 우 준
 양 흥 모
 강 인 덕
 김 교 련
 김 창 순
 최 명 회
 최 임 목
 박 창 암
 손 구 원
 우 채 승
 임 부 태
 김 준 섭
 신 우 종
 임 요 섭
 박 찬 성
 김 윤 기
 최 태 섭
 김 동 완
 장 에 규
 서 점 원
 김 정 태
 김 신 삼
 김 태 신
 조 도 영
 최 창 근
 이 인 수
 최 창 규
 이 도 형
 강 병 규